

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공고

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「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」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1일

경기도지사

I 사업 개요
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31일(수) 09:00 ~ 6월 20일(화) 18:00
- 모집인원 : 1,700명 내외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<http://apply.jobaba.net>)
- 지원대상
 -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
- 지원내용
 - 취업지원금 : 40만원 × 3개월(취·창업성공금* 포함 최대 120만원)
 - * 취·창업 성공금 -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(3개월)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
 - 취업지원 프로그램 : 취업역량 진단, 역량강화교육, 이력서 컨설팅 등
- 지급방법 : 지역화폐(주소지 시군) 지급

II

신청 자격

□ 아래 ①~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

- ① 연령 : 공고일(2023.05.31.)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* 여성
* 1963.06.01. ~ 1988.05.31. 출생자(주민등록번호 기준)
- ② 경기도 거주 :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(※2022.05.31. 이전부터 거주)
- ③ 미취업 :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,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
 - (취업) 고용보험 가입기준.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
 - (창업)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
- ④ 가구소득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
 - (산정방법)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
※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~ 5월 /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
 - (가구원수) 본인·배우자·자녀
※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/형제·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,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
 - (소득범위)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·배우자·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
※ 부모/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

< 2023년 중위소득 100% >								(단위 : 원 / 월)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
중위소득 100%	2,494,000	3,457,000	4,435,000	5,401,000	6,331,000	7,228,000	8,108,000	
건강 보험료	직장가입자	88,753	123,511	157,684	191,845	226,361	261,015	291,898
	지역가입자	26,673	68,365	121,134	151,504	191,639	235,637	273,699
	혼합	-	124,093	159,423	194,564	230,142	266,386	299,947

※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더함
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

□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

- 동시참여는 불가하나,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(순차참여)
 - 순차참여 허용 대상 : 생계급여,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
- ‘경기여성 취업지원금’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
 -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,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<타 제도와 관계 요약>

제 도 명 (관련부처)	동시참여 허용	순차참여 허용	비고
생계급여 (보건복지부)	×	○	일모아시스템 조회
실업급여 (고용노동부)	×	○	
국민취업지원제도 (고용노동부)	×	○	
경기여성 취업지원금 (경기도일자리재단)	×	×	
직접일자리 (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)	×	○	

- ※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, 훈련수당,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,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
- ※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
- ※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

III 신청 방법

< 신청 시 유의사항 >

■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31일(수) 09:00 ~ 6월 20일(화) 18:00
 - ※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, 마감일 6.20.(화)은 18: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
- 신청방법
 - 경기도 일자리재단(<http://apply.jobaba.net>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 - ※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: ☎ 1522-3582(평일 09:00~18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제출서류(온라인으로 파일 첨부)
 -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, JPEG, PNG, PDF,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

-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
【신청 및 제출서류(공통)】

- 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(관계) 필수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- 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-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-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
*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: 2023년 3월 ~ 2023년 5월

※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

※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
【추가 제출서류】 - 해당자

-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-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- 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: 대법원 전자기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-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- 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- 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-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
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
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
IV 선정 기준

○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

-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-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
 - 연령, 경기도 거주기간, 미취업, 가구소득 기준(건강보험료) 충족여부 확인
 -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

○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

- 정량평가 : 소득구간, 미취업기간,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
- 정성평가 : 구직활동계획서 평가
- 가점사항 : 해당 사항 1종만 적용
 - 육아기 자녀(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부양, 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성매매 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- ※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→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→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

○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(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),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
V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

○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3. 7월 중(예정)

-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
 - ※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(통합접수시스템) 접속하여 선정/미선정 여부 확인
-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I

선정자 필수 이행사항

-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.
- 예비교육 참석 :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
-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: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(참여자)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
-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,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임

VII

기타 유의사항

-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,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,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(선정일 기준) 취·창업 / 거주지 이전 /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경기도일자리재단(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) 콜센터 : ☎ 1522-3582
(평일 09:00 ~ 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